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0.3.23.)
- 다. 보험약제과-1054(2020.3.24.), "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 라. 서울고등법원 제8부 결정(2021.1.14.)
- 마. 보험약제과-211(2021.1.15.), "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 바. 대법원 제1부 집행정지 결정(2022.2.14, 2022아1012)

2.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중,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 대법원 2022두33521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22.2.14.)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집행정지일
전 업소	산소	2022.2.14.부터 대법원 2022두33521 보험상한금액인하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전 업소	아산화질소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기초의료보장과장, 약무정책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다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조달청장,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 한국병원약사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김충열 보험약제과장 전결 2022. 2. 14.
오창현

협조자

시행 보험약제과-587 (2022. 2. 14.)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재 / <http://www.mohw.go.kr>
정운용담당관

전화번호 044-202-2754 팩스번호 044-202-3935 / neoscape1@korea.kr / 대국민 공개